2022년 오프라인 해외판촉사업 지원신청서

◎ 신청업체 정보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주 관 사(바이어) |  | 담 당 자 |  |
| 주 소 |  |
| 전화번호 |  | E-Mail |  |
| 한국식품수입실적(`21) | (USD) | 주요취급품목 |  |

◎ 행사계획

|  |  |
| --- | --- |
| 지원구분 (해당사항 ☑) | 지원비율 50% □ 한국 대기업 제품 단독 판촉(CJ, 롯데, 신세계, 하림, KGC, 동원, 하이트진로) |
| 지원비율 80% □ 일반 가공식품 단일 품목 판촉 ex)라면 판촉□ 일반 가공식품 다품목 종합판촉 ex)라면+유제품 판촉 |
| 지원비율 90% □ 신선농산물 또는 전략품목(김치·유자차·인삼·삼계탕) 판촉 |
| 행사국가 |  | 행사도시 |  |
| 행사기간 |  | 행사일수 | (일) |
| 행사매장 |  | 매 장 수 | (점) |
| 행사대표품목1 | *김치* \* 품목명을 명확히 기입하고, 품목이 많을 경우별첨 리스트 제출 요망 | *대상* |
| 행사대표품목2 | *홍삼정* | *한국인삼**공사KGC* | 행사대표품목3 | *유자차* | *두원농협* |
| 행사대표품목4 | *막걸리* | *국순당* | 행사대표품목5 | *냉동만두* | *CJ* |
| 신청예산 | (원화) | (현지화) | **목표수입액 (=사업의무액)** | (USD) |
| 행사중점 추진방향 | - |

\* `22년 판촉부터 업체가 제시하는 목표수입액(USD)을 사업자 선정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, 해당 목표수입액을 기존의 사업의무액으로 갈음하여, 최종 사업비 정산 및 송금 시, 해당 목표 수입액(사업의무액) 대비 실제 달성한 수입실적 비율에 따라 업체가 배정받은 예산에서 차감 하여 송금할 예정이오니, 목표수입액을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\* `22년 해외판촉 사업 선정 시, 실제 배정받는 예산은 업체 신청예산보다 적어질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이 줄어든 비율만큼 목표수입액(사업의무액)도 감액됩니다.

◎ 행사 유통매장 정보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유통매장 |  | 총점포수 |  |
| 주 소(본점) |  |
| 홈페이지 |  | 매출액(`21) | (USD) |
| 한국식품취급현황 | ▫ 주요 취급품목 :▫ 특이사항 : |



**2022년 오프라인 해외판촉사업 안내**



# 사업추진 절차

⇨ ⇨

바이어 → aT해외지사

③ 행사계획서 제출

aT본사 → aT해외지사 → 바이어

② 평가 및 선정결과 통보

바이어 → aT해외지사

① 사업신청

⇩

④ 행사추진

⑤ 사업 결과보고 및 비용 정산서류 제출

⑥ 사업비 송금

⇦ ⇦

aT해외지사에서 행사점검

바이어 → aT해외지사

aT본사 → 바이어

\*법인명의 계좌송금원칙

# 지원기준

* 1. **판촉형태**
		+ 판촉은 **반드시 현지 유통채널 내 행사품목이 입점**되어 있어야 하며, **시식 또는 시음활동이 이루어져야 함**
* 시식활동이 어려운 경우 **유통매장 내 행사관련 홍보물이나 장치 필수 설치**

(현수막, 배너, 판넬, 매대설치 등)

* 오프라인 유통매장을 기본으로 하되, 비대면(온라인시식, SNS 홍보 등) 플랫폼 활용 가능

< 예 시 > \* 항목별 지원기준 해석이 필요한 경우 aT와 사전협의 필요

① 제품소개나 레시피 콘텐츠 제작 배포, 유튜브, 페이스북 등 활용 미디어 홍보 및 이벤트 실시, 앤드캡, KIOSK 및 E-Pop 스크린, 무인 전용매대 설치, 시식체험을 위한 푸드트럭, 온라인 시식 등

② O2O매장 행사 관련 해당사이트 메인페이지, 슬라이딩, 배너광고 제작, SNS, 유튜브 내 쇼핑태그, 링크 등

\* 온라인몰은 오프라인 매장과 직접 관련된 곳이거나 ‘유통매장 전용관’ 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

 (ex 중국 하마선생 유통매장 연계 하마선생앱 홍보 가능, 태국 TheMall 매장 연계 HappyFresh앱 내 TheMall 전용관 홍보 가능)

## - 오프라인 유통매장 판촉 없이 단순 제품설명회, 홈쇼핑 판촉, 카탈로그 제작 등 추진 불가

* 1. **사업의무액**
		+ **사업 신청 시 업체가 제시하는 목표수입액을 사업의무액으로 간주하며, 신청 예산의 최소 2배 이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해야 100% 정산 가능**

## - 판촉행사 품목의 **수입의무액(CIF기준)**으로 행사기간 전후 30일 동안의 수입실적 으로 달성여부 판단, 미달성 시 달성 비율(%)에 따라 최종지원금 감액 지급

ex) 지원금액 한화 5천만원일 시 수입의무액 최소 83,334USD 제시 및 달성 필요(환율1USD=1,200KRW가정)

* 공식 수입신고서 제출하되, 인보이스 제출시는 B/L첨부(불가피한 경우 사유서, 수출신고필증 제출)
* 중국지역의 경소상 연계 판촉의 경우, 거래관계 수입상으로부터 받은 수입대행증명 첨부
* 벤더일 경우 수입상과 거래관계증빙(계약서 등)과 수입상으로부터의 구매영수증(2배이상) 동시 제출시 인정

# 기타

## 행사국가, 매장, 품목은 변경불가가 원칙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변경이 불가 피한 경우 aT 해외지사 승인을 받아야 함

* 사업비는 ‘선지출, 후정산’ 원칙으로 결과보고시 정산증빙 서류 제출 필요

\* 지원항목별 필요 정산 증빙은 각 aT해외지사로 문의